

現況 및 示範事業概要

= 保健醫療 示範事業 人力開發 研鑽會 =
(資 料)

日 字: 1976年11月25日(木)

場 所: 서울 外交 俱樂部

韓國保健開發研究院

韓國保健開發研究院

目 次

I. 韓國保健開發研究院 現況

1. 設立経緯	1
2. 設立目的	3
3. 機 構	3
4. 業 務	4
5. 保健政策協議会	4
6. 理事会	6
7. 保健企劃団	7
8. 76年度 主要施策方向	7
9. 76年度 部門別 事業計劃	8

II. 綜合保健医療示範事業

1. 概 要	9
2. 目 標	9
3. 目標達成을 爲한 事業原則	9
4. 示範地域選定	10
5. 事業計劃 作成要領	13

附 録

I.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 (全文)	25
II.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施行令 (全文)	31
III. 韓國保健開發研究院定款 (全文)	37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this is essent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and tool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It highlights the need for consistent data collection procedures and the use of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to derive meaningful insights from the data.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focuses on the role of technology in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It discusses how modern software solutions can streamline data collection, storage, and processing, thereby improving efficiency and reducing the risk of errors.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addre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data security and privacy.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robust security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and ensure compli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detailed overview of the data analysis process, from data cleaning and preprocessing to the final interpretation of results. It includes examples of common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s in various business contexts.

6. The six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data visualization in communicating complex information. It explores different types of charts and graphs and provides guidelines for creating clear and effective visualizations that facilitate data-driven decision-making.

7. The seventh part of the document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ke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t emphasizes the need for a data-driven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encourages the continuous monitoring and improvement of data management practices.

I . 韓國保健開發研究院現況

1 . 設立經緯

1972. 12. 國際經濟對韓援助協議體 (IECOK) 파리會議에서 韓國
代表團이 郡立病院 等 所要資本 借款要請

1973. 11. 上記 要請에 依拠 USAID 調査團 來韓
建議事項 ;

1. 保健醫療 需要調査

2. 經費節約型의 保健醫療體制 確立

3. 保健企劃 專担部署 設置

1974. 6. 韓國政府와 美國政府 (美國國際開發處) 間에 保健企劃協定
締結

AID 支援內容 : 710,000 美弗 (340,800 千圓)

1974. 11. 經濟企劃院에 5,000,000 美弗 借款 導入要請

1975. 1. 經濟企劃院, 保健社會部, 美國國際開發處間에 保健開發借款
事業內容에 관한 意見調整

1975. 8. 保健開發, 借款事業 最終計劃書를 經濟企劃院에 提出

1975. 9. 韓國政府 (經濟企劃院長官) 와 美國政府 (美國國際開發處長)
間에 示範保健事業을 위한 AID 開發借款協定 締結

1975. 12.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 (法律第 2857 号) 公布

1975. 4. 同法施行令 公布 (大統領令 第 8061 号)

1976. 4. 3. 保健政策協議會 第1次會議開催

(1) 韓國保健開發研究院 設立委員 委囑承認

設立委員	保健社會部次官	朴承咸
	經濟企劃院企劃次官補	徐錫俊
	서울大學校保健大學院長	朴亨鍾
	大韓家族計劃協會理事長	李宗珍
	保健社會部醫政局長	張慶植

(2) 韓國保健開發研究院 定款承認

(3) 同 初代院長에 朴亨鍾博士 任命承認

(4) 事業計劃等 先行條件 履行 承認

1976. 4. 7. 初代院長에 朴亨鍾博士 任命

1976. 4. 8. 設立委員會에서 當然職 理事를 除外한 理事選任

理事	서울醫大學長	權彝赫
	大韓醫學協會長	孫春昊
	大韓家族計劃協會理事長	李宗珍
	大韓藥師會 副會長	洪文和

1976. 4. 8.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 龍山區 桃洞1街2의10

第一빌딩 11層으로 內定

1976. 4. 8. 保健社會部長官의 定款認可받음.

1976. 4.12. 法人設立許可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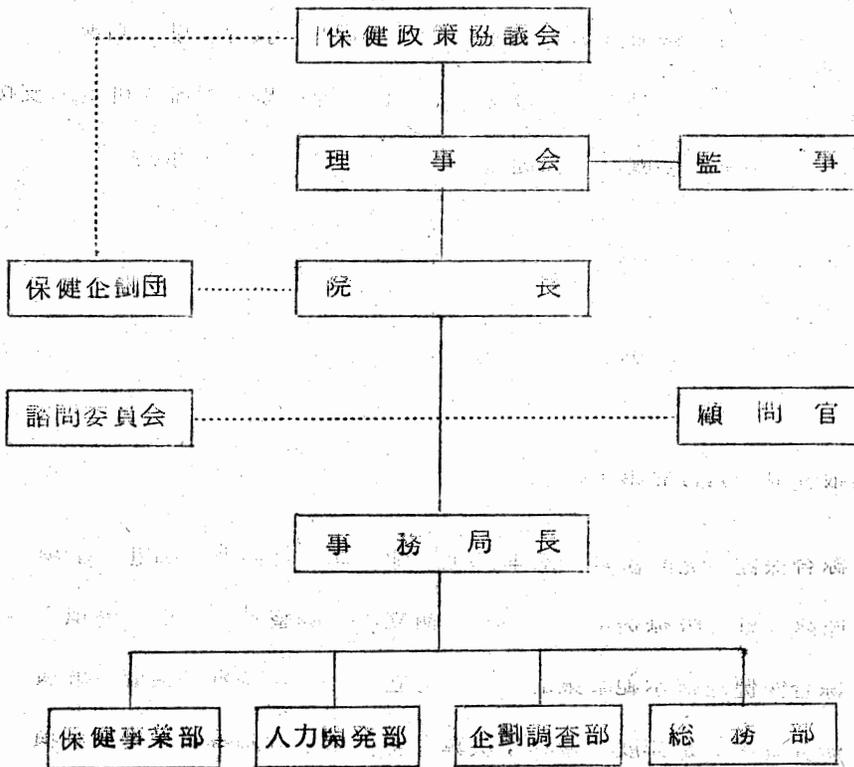
1976. 4.15. 法人設立 登記 完了

1976. 4.19. 開院式

2. 設立目的 (研究院法第1條)

國民保健全般에 關한 制度의 發展 및 이와 關聯된 諸部門의 課題를 現實的이고 体系的으로 研究하게 함으로써 國家의 保健計劃 및 保健政策 樹立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3. 機 構



4. 業 務 (研究院法第 6 條)

- A. 国民保健에 關한 制度의 發展을 위한 調査研究
- B. 合理的인 医療提供體系의 樹立을 위한 調査研究 및 評價
- C. 綜合保健醫療 示範事業 (一定地域內에서 示範的으로 行하는 疾病의 豫防, 診斷, 治療, 再活事業 및 醫療保險等에 關한 綜合的인 事業) 의 實施 및 評價
- D. 長·短期 保健醫療의 需要調査 및 評價
- E. 地域社会 住民의 健康維持 및 向上을 위한 支援
- F. 綜合保健醫療 示範事業에 從事하는 者의 教育 및 訓練
- G. 國內外 研究機關과의 情報交換, 共同研究 및 이에 對한 支援
- H. 國家로 부터 委囑된 保健醫療에 關한 調査研究事業

5. 保健政策協議會

A. 審議事項 (施行令第 12 條)

- 1) 綜合保健開發計劃의 基本方向 및 그 目標에 關한 事項
- 2) 保健 및 醫療提供 體制의 樹立과 調整에 關한 事項
- 3) 綜合保健醫療示範事業計劃의 樹立 및 評價에 關한 事項
- 4) 研究院의 每年度 豫算, 決算 및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 5) 研究院 定款의 作成 및 그 變更에 關한 事項

6) 院長 및 監事의 任命에 關한 事項

7) 其他 保健 및 医療의 主要政策과 關聯된 事項

B. 機 成

經濟企劃院內에 設置하도록 하고 委員長은 副總理兼 經濟企劃
院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保健社會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內
務部長官, 文教部長官과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가 되도록 하였
음. (法 第 20 條)

C. 委員名單

위원장 :	南 應 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當然職
부위원장 :	申 鉉 福	보건사회부장관	"
위원 :	金 致 烈	내무부장관	"
	柳 基 春	문교부장관	"
	鄭 熙 燮	국회보사문과위원	
	梁 在 謨	연세대학교의과대학교수	
	田 山 卓	연세대학교간호대학장	
	朴 亨 鍾	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	

6. 理事會

A. 議決事項

-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
- 2) 重要事業計劃 및 變更
- 3) 豫算 및 決算
- 4) 定款의 變更
- 5) 重要規程의 制定 및 改廢
- 6) 重要財産의 処分
- 7) 定款에 의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
- 8) 其他 院長이 附議하는 事項

B. 理事名單

이 사 장	: 權 麟 赫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장	
이 사	: 張 德 鎭	경제기획원차관	當然職
	徐 廷 和	내무부차관	"
	朴 承 咸	보건사회부차관	"
	金 滿 堤	한국개발연구원장	"
	朴 亨 鍾	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	"
	李 宗 珍	대한가족계획협회이사장	
	洪 文 和	대한약사회부회장	
	孫 春 昊	前 대한의학협회장	

7. 保健企劃團의 業務

- A. 保健開發計劃과 그 政策手段의 研究
- B. 研究院의 綜合保健醫療示範事業에 대한 評價
- C. 保健政策資料의 蒐集
- D. 其他 保健政策協議會 委員長이 제시한 保健政策에 관한 研究

8. 76年度 主要施策方向

- A. 우리나라 實情에 가장 알맞는 低廉良質型 保健醫療制度의 開發을 爲한 示範事業의 基盤을 造成한다.
- B. 地域住民의 積極적인 參與를 誘發할 수 있는 保健醫療組織 體系를 開發한다.
- C. 保健醫療事業의 効率化를 爲한 人力開發 및 弘報活動을 展 開한다.
- D. 保健醫療制度改善을 爲한 体系的인 調査研究을 施行한다.

9. 76年度 部別 事業計劃

A. 保健事業部

- 1) 示範事業選定 確認調査
- 2) 示範地域保健医療伝達体系開発
- 3) 農村 및 低所得層을 為한 保健医療事業세미나
- 4) 地域社会保健医療事業을 為한 연찬회
- 5) 示範事業支援体制確立
- 6) 医療保險事業基盤造成
- 7) 示範地域住民에 對한 弘報活動

B. 人力開發部

- 1) 保健医療委員訓練
- 2) 海外訓練
- 3) 教材開發 및 編纂
- 4) 弘報資料製作
- 5) 文獻情報管理
- 6) 視聽寬教材開發
- 7) 保健人力開發연찬회

C. 企劃調査部

- 1) 示範地域保健事業基礎調査
- 2) 既存事業評價調査
- 3) 示範事業評價方法에 관한 연찬회
- 4) 示範事業評價報告書
- 5) 資料處理 및 資料銀行運營
- 6) 諮問委員會運營
- 7) 研究用役事業
- 8) 外國顧問官技術協力

II . 綜合保健醫療示範事業

1 . 概 要

研究院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研究院은 人口 50 萬名을 包含하는 3 個郡을 對象으로 綜合保健醫療 示範事業을 1977 年初 부터 實施한다 .

2 . 目 標

地域內 모든 住民들로 하여금 가장 바람직하고 健康狀態를 維持할 수 있도록 保護하며 必要할 때 適切한 醫療를 받을수 있도록 우리나라 實情에 가장 알맞는 制度를 開發한다 .

3 . 目標達成을 위한 事業原則

- A . 住民의 必要와 要求에 기초를 둔 保健事業을 開發한다 .
- B . 既存資源 (人力 , 施設等) 의 能率을 極大化한다 .
- C . 豫防과 治療事業을 統合한다 .
- D . 低所得層이 負擔할 수 있도록 經費節約 方案을 모색한다 .

- E. 患者의 後送體系를 確立한다.
- F. 住民의 積極的參與를 促進한다.
- G. 部落單位 保健事業을 새마을事業의 一環으로 組織運營한다.
- H. 公共部門의 效率的 投資를 擴大한다.
- I. 民間部門의 效率的 活用을 圖謀한다.
- J. 醫療費의 公共負擔 方案을 모색한다.
- K. 政府가 全國的으로 施行할 수 있는 方案을 研究한다.

4. 示範地域選定

A. 示範地域選定基準 및 方法

1) 8 個道 (濟州道除外) 에서 推薦된 候補地域 16 個郡

道	郡
京畿道	광주군, 김포군, 강화군
江原道	순성군, 홍천군
忠清北道	옥천군, 괴산군
忠清南道	연기군, 아산군
全羅北道	옥구군,
全羅南道	화순군, 장성군
慶尙北道	의성군, 군위군
慶尙南道	김해군, 거제군

2) 示範地域 選定基準

- a. 各道는 人口 10 万程度의 郡地域 2 個所 以內를 候補地 로 推薦함.
- b. 候補地域은 道厅所在地에서 車輛으로 2 時間 内外의 距離 에 位置함.
- c. 候補地域은 經濟社会面에서 低開發地域임.
- d. 候補地域은 保健医療团体 및 住民의 協助度가 比較的 높은 地域임.
- e. 候補地域은 새 마을事業이 進行되고 있으나 推進內容으로 보아 將來가 期待되는 地域임.
- f. 地域行政官署의 長이 다음의 條件을 履行한다고 確信할 수 있는 地域
 - ① 地域保健医療事業計劃을 事前에 韓國保健開發研究院과 協議함.
 - ② 地域保健医療事業 遂行에 있어 韓國保健開發研究院의 指導를 받음.
 - ③ 地域內 保健官署의 重要任職員의 任免은 韓國保健開發研究院과 事前 協議함.

3) 選定評價方法

- a. 人口 및 距離는 全國郡平均을 基準으로 T-評點을 適用함.
- b. 進學率, 衛生水普及率, 電氣普及率, 1人當 地万稅負擔額 및 農家當 米穀生産量等은 5段階評點法을 適用함.

o. 醫師當人口, 病床當人口, 電話當人口 및 農家構成比等은 比率이 높은 地域을 優先하여 T-評點法을 適用함.

d. 새마을事業은 自立, 自助, 基礎마을의 百分率을 5段階評點法을 適用함. (自立과 自助는 各各 2點, 3點을 加重시키고 基礎마을은 加重치 없음)

e. 保健機關 協助度의 順位는 百分比의 主觀的 評點方法을 適用함.

4) 順位決定에 있어서의 主要考慮事項

a. 既存示範地域 除外

(既存示範地域의 定義는 1次保健醫療事業을 위한 組織이 既爲投入活用되는 地域으로 함)

b. 地域的 按配

c. 地形的 特性

B. 示範地域選定

各道知事의 推薦에 의한 綜合保健醫療示範推薦地域 16個地域 가운데 選定基準에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다음 地域을 綜合保健醫療示範地域으로 選定함.

全 羅 北 道 沃 禰 郡

慶 尙 北 道 軍 威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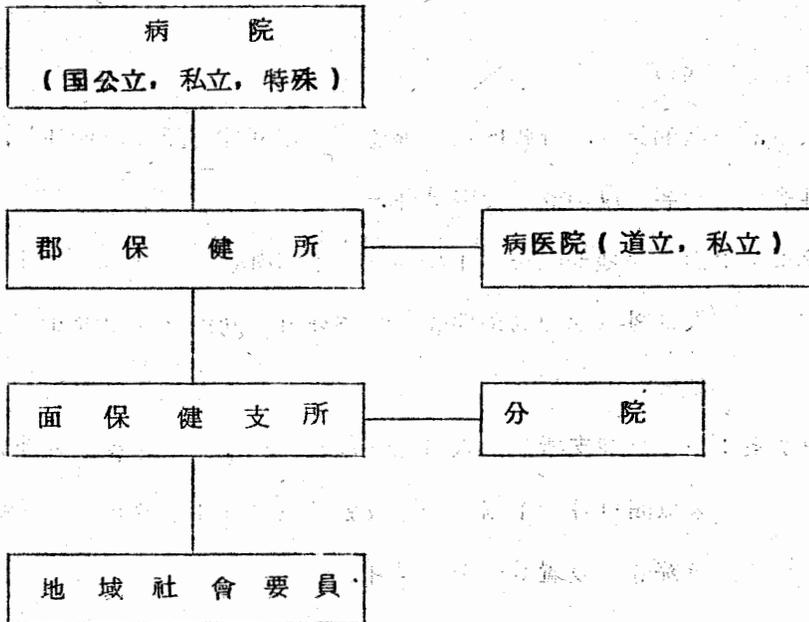
江 原 道 洪 川 郡

5. 事業計劃作成要領

A. 事業體系

1) 基本方針

a. 事業體系는 다음의 圖面과 같다.



b. 面保健支所는 一般患者의 初診을 包含한 包括的 保健医療 活動을 展開한다.

c. 郡保健所는 소재읍 또는 面에 對한 支所로서의 機能, 支所活動의 行政支援 및 檢査室 支援을 擔當한다.

- d. 2次医療는 郡에 隣接한 病院(公私立)을 活用하거나 이러한 施設이 없는 郡은 保健所가 診療機能을 擔當한다.
- e. 綜合病院級 醫療와 特殊疾患에 對한 醫療는 道内の 大規模 公私立病院과 特殊疾患에 對한 專門病院이 擔當한다.
- f. 地域社會住民의 自發的 參與를 促進하고 各種 地域社會組織의 保健醫療機能을 開發하여 供給體系의 機能을 補完한다.

2) 面 保健支所

a. 設置運營基準

人口, 地理的條件, 行政區域 등을 考慮하여 設置運營하되, 다음과 같은 原則을 設定한다.

第1案: 面 保健支所는 1個面に 1個所를 設置 運營하되, 人口와 地理的條件을 勘案하여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第2案: 面 保健支所는 人口 20,000-30,000명을 包含하는 醫療圈마다 1個所를 設置 運營하되 境遇에 따라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b. 機能

- 1) 一般患者의 最初診療
- 2) 傳染病管理, 結核管理, 母子保健, 家族計劃
- 3) 保健教育, 環境衛生指導
- 4) 保健統計資料 蒐集

5) 地域社會組織의 保健活動支援 및 指導

3) 郡 保健所

a. 設置基準

2次 医療施設로서 活用할 수 있는 醫療機關이 充分한 地域과 그렇지 않은 地域을 区分하여 實情에 맞는 保健所를 設置한다.

b. 機能

- 1) 직할 邑面에 對한 面 保健支所와 같은 機能
- 2) 面 保健支所에 對한 檢査室 支援
- 3) 面 保健支所 活動의 行政支援 및 企劃調整
- 4) 面 保健支所의 事業에 對한 指導監督
- 5) 채원 조달의 運營을 관장
- 6) 保健所 A型은 2次医療와 1次医療間의 連結調整
- 7) 保健所 B型은 2次医療와 1次医療間의 連結調整과 더불어 진신마취를 要하는 外科疾患을 除外한 入院 加료.

4) 要員構成

a. 面保健支所

	保健支所	分 院
醫師	1	
看護員	1	1
助産員	1	
診療補助員	1	
多目的保健要員	1/2,000인	1/2,000인

多目的保健技士

1

1

行政要員

1

1

b. 郡 保健所

保健所

A 型

B 型

所長 (医師)

1

1

看護員, 助産員

1

1

保健看護員

1

1

薬 師

1

1

X - 線技士

1

1

臨床病理士

1

1

保健統計要員

1

1

保健教育要員

1

1

保健衛生要員

1

1

歯科衛生師

1

1

결핵요원

1

1

事務職

4-5

4-6

運転技士

1

1

雇傭職

1

2

c. 保健所 直轄支所

医 師

1

2

保健看護員

1

2-3

看護員 - 助産員

1

2

診療看護補助員	1	2-3
多目的保健委員	1/2,000인	1/2,000인
多目的技士	1	2
事務職	2	3

※ 既存人력을 最大한 活用하며 既存 및 新規採用要員에 對하여 소정의 教育訓練을 實施할 것임.

3) 施設 및 裝備

a. 面保健支所

	保 健 支 所	分 院
建 物	45坪 - 60坪	20坪
	(診察室, 処置室, 保健相談室, X-線室, 檢査室, 待機室, 분만실, 事務室, 病室, 宿直室)	(診察室, 処置室, 保健相談室, 待檢室, 宿直室)
	X-線 (20mm Amp)	1
	支所裝備설	1
	小型電氣냉장고	1
	電 話	1

b. 郡 保健所

	A 型	B 型
建 物	100 坪	150 坪
	(診療室, 処置室, 분단室, 健康相談室, 檢査室, 藥局 X - 線室, 事務室, 會議室)	(診療室, 処置室, 분단 室, 病室, 健康相談室, 檢査室, 藥局, X - 線 室, 事務室, 會議室)
医療裝備		
엠브런스	1	1
모터싸이클		
또는, 자전거		

* 施設 및 裝備는 既存資源을 最大한 活用하되 追加要素分을 補充한다.

B, 地域社會의 參與와 組織

1) 基本方針

- a. 새 마을事業과 既存地域社會組織의 活動을 保健医療的 側面에서 支援하면서 이들의 保健活動을 조장한다.
- b. 道에는 保健協議會를 두며 支士는 關係局課長, 保健分野機關 代表 및 其他 著名인사 中에서 諮問委員會를 위촉한다. 協議會는 保健示範事業에 對하여 諮問한다.
- c. 郡에는 保健運營委員會를 두며 運營委員은 郡守, 保健開發

研究院 示範地域代表, 保健所長, 關聯病院長, 郡 醫師會長,
医療保險組合代表, 警察署長, 教育長, 郡 農協組合長, 農村指
導所長, 새마을 郡指導者 等에서 構成하며 委員長은 郡守
가 되며 간사는 委員長이 任命한다.

委員會는 保健事業計劃과 豫算에 關하여 審議 議決하며
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의 保健活動을 주도한다.

- d. 面에는 保健開發委員會를 두며 諮問委員은 面長, 保健支所
長, 面警 察支所長, 새마을指導者, 農村指導所 面支所長, 農
協單位 組合代表, 學校代表, 教會代表 等에서 構成하고 委
員長이 되며 간사는 委員長이 任免한다. .

委員會는 保健事業에 對하여 諮問한다.

- e. 부락에는 비정규 부락保健要員을 둔다.

定規 保健要員의 活動을 補完하고 保健活用을 日常化하기
위하여 부락마다 地域社會婦女組織에서 保健擔當要員 1人
을 양성 活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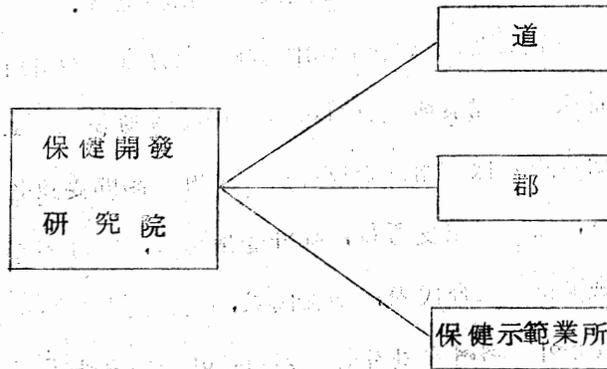
이들의 役割을 다음과 같다.

- 1) 保健情報의 蒐集報告 및 진과
- 2) 분만키트의 管理
- 3) 應急処置
- 4) 피임제 보급등

- o. 行政體系

1) 示範事業의 運營主體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開發한다.

現在의 保健行政組織을 通하여, 示範事業을 運營케 하고,
保健開發研究院은 技術 및 財政的 支援을 原則으로 한다.



2) 保健事業遂行에 있어서 人事, 豫算, 事業計劃等 主要事項에
對하여는 保健開發研究院과 協議下에 遂行토록 하여야 한
다.

3) 示範地域에서의 行政中枢機構는 郡 保健所로 하며 保健支
所는 保健所の 直接的인 行政的 통제 하에 둔다.

D. 財源機構

示範事業은 地域社會의 全住民을 參與시켜 대다수 住民에게 医
療保險事業 및 其他 財源調達方法을 開發 適用한다.

Ⅱ. 豫算編成

1) 1977年 1年은 豫算을 編成하며 1978-1981年 4個年은
소요豫算을 推定한다.

- 2) 歲出豫算은 1977年度 政府豫算編成基準에 의거 作成함을 原則으로 한다.
- 3) 当該年度の 歲入은 翌年度の 歲出豫算에 移越하며 歲入의 基準을 保健所, 支所, 分院 및 保健委員 等の 各 水準과 地域 實情에 따라 策定한다.
- 4) 保健医療 전달체계의 組織과 活動은 2年 乃至 3年에 完了하고 目標年度인 1981年 以前에 自立 運營體制를 정비한다.

... ..

... ..

... ..

... ..

... ..

附

錄

1948

1948

附錄 I.

(關 係 法 令)

法律 第2857号(75.12.31)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

第 1 條 (目的) 이 법은 韓國保健開發研究院 (以下 “ 研究院 ” 이라 한다) 을 設立하여 이로 하여금 國民保健 全般에 關한 制度의 發展 및 이와 關聯된 諸部門의 課題를 現實的이고 體系的으로 研究하게 함으로써 國家의 保健計劃 및 保健政策의 樹立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2 條 (法人) 研究院은 法人으로 한다 .

第 3 條 (設立) 研究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

第 4 條 (定款) ① 研究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 目的

2 . 名稱

3 . 事務所의 所在地

4 . 基金에 關한 事項

5 . 任員에 關한 事項

6 . 理事會에 關한 事項

7 . 內部組織에 關한 事項

8 .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9. 業務에 關한 事項

10. 公告에 關한 事項

②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5 條 (登記) 研究院의 設立登記 其他 登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6 條 (業務) ① 研究院은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國民保健에 關한 制度의 發展을 위한 調査 研究
2. 合理的인 醫療提供體系의 樹立을 위한 調査. 研究 및 評價
3. 綜合保健醫療示範事業 (一定地域內에서 示範적으로 行하는 疾病의 予防. 診斷. 治療 再活事業 및 醫療保險等에 關한 綜合的인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實施 및 評價
4. 長. 短期 保健醫療의 需要調査 및 評價
5. 地域社會 住民의 健康維持 및 向上을 위한 支援
6. 綜合保健醫療示範事業에 從事하는 者의 教育 및 訓練
7. 國內外 研究機關과의 情報交換共同研究 및 이에 대한 支援
8. 國家로부터 委囑된 保健醫療에 關한 調査 研究事業

② 研究院의 綜合保健醫療示範事業에 從事하는 者는 그 示範事業의 目的과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特히 輕微한 醫療行爲에 限하여 醫療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行할 수 있다.

第 7 條 (承認事項) ① 研究院의 每年度의 事業計劃. 予算. 決算.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은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保健社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8條(任員) ① 研究院에 院長 1人을 包含한 9人以内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第1項의 任員中 院長을 除外한 任員은 모두 非常任으로 한다.

第9條(任員의 任命) ① 院長은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社会部長官이 任命한다.

② 院長을 除外한 理事의 進任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한다.

③ 監事は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社会部長官이 任命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第11條(院長의 職務) 院長은 研究院을 代表하며, 研究院의 業務를 統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12條(理事會) ① 研究院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기 爲하여 研究院에 理事로써 構成되는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中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

다만 院長인 理事는 理事長을 兼할 수 없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⑤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 13 條 (基金) ① 研究院의 設立 및 運營에 所要되는 資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研究院에 基金을 設置한다.

② 研究院의 基金은 政府와 政府 以外의 者의 出捐金으로 造成한다.

第 14 條 (出捐金) ① 政府는 第 13 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造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出捐金을 予算의 範圍안에서 交付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와 基金의 使用 및 管理等に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5 條 (國有財産의 無償貸與) ① 政府는 研究院의 設立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研究院에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의 內容 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有財産法에 정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6 條 (補助) 政府는 予算의 範圍안에서 研究院의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 17 條 (民法의 準用) 研究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18 條 (秘密維持 義務) 研究院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滿泄 하여서는 안된다.

第 19 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法에 의한 研究院이 아닌 者는 韓國保健開發研究院 其他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 20 條 (保健政策協議會) ① 研究院의 業務를 支援하고 調整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에 保健政策協議會를 둔다 .

② 保健政策協議會의 委員長은 經濟企劃院長官이 되고 , 副委員長은 保健社會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內務部長官 . 文交部長官과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가 된다 .

③ 保健政策協議會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 21 條 (罰則) ① 第 1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 萬원 以下의 罰金에 처한다 .

② 第 19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 萬원 以下의 罰金에 처한다 .

第 22 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 令으로 정한다 .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1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 한다 .

第 2 條 (設立準備)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 5人 以內의 設立 委員會를 委囑하여 研究院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担当하게 된다 .

② 設立委員은 委囑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内에 定款을 作成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保健社会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基金을 造成하기 위한 政府의 最初 出捐金이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 設立委員은 研究院의 院長이 任命된 때에는 遲滯없이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⑥ 設立委員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国内示範事業에 대한 準用) 保健社会部長官이 認定하는 国内의 綜合保健医療示範事業에 대하여는 法第6條第2項을 準用한다.

附錄 II .

대통령령 제 8061 호

1976년 4월 1일 공포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립등기)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이하 " 연구원 " 이라 한다) 의 설립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제 3 조 (이전등기) ① 연구원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소제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 2 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 2 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할 사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 6 조 (첨부서류)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장관과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출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중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종사자의 의료행위) ① 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행위에 한하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행하여야 한다.

1. 외상 등의 응급처치
2. 예방접종
3. 피임기구의 삽입
4. 정상분만의 개조
5. 의사의 처방에 조제된 의약품의 투여

②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종사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참고서류

제 9 조 (출연금의 교부) 법 제 14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제상하여 행한다.

제 10 조 (기금의 운용) ① 연구원의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따로 규정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1 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절차) ①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연구의 재산목록을 갖추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건의료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보건의료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그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건 및 의료제공체계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제 13 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위원) 법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 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과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획단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6 조 (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소집, 의안 및 심의원사항의 정리, 회의록에 작성 기타 연락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 17 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보건기획단) ①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보건기획단 (이하 " 기획단 " 이라 한다) 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개발계획과 그 정책수단의 연구.
2. 연구원의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3. 보건정책자료의 수집
4. 기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

③ 기획단의 구성과 그 직원의 임면 보수 기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錄 Ⅲ

韓 國 保 健 開 發 研 究 院 定 款

第 Ⅰ 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이 法 人 은 韓 國 保 健 開 發 研 究 院 (以 下 “ 研 究 院 ” 이 라 한 다.) 이 라 고 稱 한 다.

第 2 條 (目 的) 研 究 院 은 國 民 保 健 全 般 에 關 한 制 度 의 發 展 및 이 와 關 聯 된 諸 部 門 의 課 題 를 現 實 的 이 고 體 系 的 으 로 研 究 하 게 함 으 로 써 國 家 의 保 健 計 劃 및 保 健 政 策 樹 立 에 寄 與 함 을 目 的 으 로 한 다.

第 3 條 (所 在 地) 研 究 院 은 그 主 된 事 務 所 를 京 師 特 別 市 에 둔 다.

第 4 條 (業 務) 研 究 院 은 第 2 條 의 目 的 을 達 成 하 기 위 하 여 다 음 各 号 의 業 務 을 行 한 다.

1. 國 民 保 健 에 關 한 制 度 의 發 展 을 為 한 調 查 研 究
2. 合 理 的 인 醫 療 提 供 體 系 의 樹 立 을 為 한 調 查 研 究 및 評 價
3. 綜 合 保 健 醫 療 示 範 事 業 (一 定 地 域 內 에 서 示 範 的 으 로 行 하 는 疾 病 의 予 防 , 診 斷 , 治 療 , 再 活 事 業 및 醫 療 保 險 등 에 關 한 綜 合 的 인 事 業 을 말 한 다. 以 下 같 다) 의 實 施 및 評 價
4. 長 短 期 保 健 醫 療 의 需 要 調 查 및 評 價
5. 地 域 社 會 住 民 의 健 康 維 持 및 向 上 을 為 한 支 援
6. 綜 合 保 健 醫 療 示 範 事 業 에 從 事 하 는 者 의 教 育 및 訓 練
7. 國 內 外 研 究 機 關 과 의 情 報 交 換 , 共 同 研 究 및 이 에 對 한 支 援
8. 國 家 로 부 터 委 囑 된 保 健 醫 療 에 關 한 調 查 , 研 究 事 業
9. 前 各 号 에 附 帶 되 는 事 業

第 2 章 資 産 및 會 計

第 5 條 (基本財産) 研究院은 다음 各号의 財産을 基本財産으로 한다.

1. 設立者가 設立當時에 出捐한 出捐金
2. 大韓民國政府 또는 國內의 團體나 個人으로부터 支給받은 出捐金
3. 外國政府, 國際機關 또는 外國機關이나 外國人으로부터 支給받은 出捐金
4. 大韓民國政府 또는 國內외의 團體나 個人으로 부터 讓與나 寄附받은 財産

第 6 條 (重要財産의 処分制限) 研究院의 基本財産中 다음 各号에 揭記하는 財産을 讓渡하거나 担保로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 理事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1. 土地 및 建物
2. 其他 理事會가 指定하는 財産

第 7 條 (基金의 管理) ①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 (以下 “法” 이라 한다) 第 13 條 및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施行令 (以下 “令” 이라 한다) 第 10 條의 規定에 依한 基金 (以下 “基金” 이라 한다) 의 運用 및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別途 規程으로 定한다 .

② 前項에 의한 規程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8条(營財源) 研究院의 運營財源은 基金에서 生한 果實, 政府의 補助金, 出損金,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9条(事業年度) 研究院의 事業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第10条(事業計劃 等) ① 研究員의 院長(以下 "院長"이라 한다)은 每年 다음해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每會計年度 開始前인 10月31日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前項에 依한 承認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1条(決算書等) 院長은 當該事業年度의 決算書를 다음年度 3月 31日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2条(剩餘金處理) 每會計年度의 剩餘金은 前年度 移越損失을 補填하고도 殘余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의 事業年度로 移越하거나 基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第3章 任員·職員 및 理事會

第13条(任員의 定數) ① 研究院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人
2. 理事 9人(理事長 및 院長包含)
3. 監事 1人

② 院長을 除外한 모든 任員은 非常勤職으로 한다.

第 14 条 (理事의 任命) 理事는 理事會에서 選出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다만, 다음에 揭記하는 者는 当然職理事가 된다.

1. 經濟企劃院 次官

2. 內務部 次官

3. 保健社會部 次官

4. 韓國保健開發研究院長

5. 韓國開發研究院長

第 15 条 (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 任員은 重任될 수 있다.

③ 任員의 欠員이 있을 때에는 遲滯 없이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16 条 (理事長) ① 理事長은 理事中에서 理事會가 選任하되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院長인 理事는 理事長을 兼할 수 없다.

②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理事長이 事故 또는 欠員일 境遇에는 院長이 理事會를 召集하되 当然職理事를 除外한 理事中 年長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 17 条 (監事) ① 監事는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이 任命한다.

② 監事는 研究院의 財産狀況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여 이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18条(院長) ① 院長은 保健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이 任命한다.

② 院長은 研究員을 代表하며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研究院의 業務를 統理한다.

第19条(事務局長) ① 研究院에 事務局長을 둔다.

② 事務局長은 院長을 補佐하고 院長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院長이 任免하되,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0条(職制) 研究院의 職制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別途 規程으로 定한다.

第21条(職員) ① 研究院에 必要한 職員을 두되 職員은 院長이 任免한다.

② 職員의 任免, 報酬, 服務基準 等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別途規程으로 定한다.

第22条(理事會) ① 理事會는 理事長 및 院長을 包含한 理事全員으로 構成한다.

②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23条(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任員의 選任 및 解任

2. 重要事業計劃 및 變更

3. 豫算 및 決算

4. 定款의 變更

5. 重要規程의 制定 및 改廢

6. 重要財産의 処分

7. 定款에 의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

8. 其他 院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 24 條 (理事會의 議事)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② 任員의 選任 또는 定款의 變更에 關하여는 在籍理事 3 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研究院의 解散에 關하여는 在籍理事 4 分の 3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定期 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区分하고 定期理事會는 每年 2 回, 臨時理事會는 院長, 監事 또는 理事 3 分の 1 以上の 要請이 있거나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理事長이 召集한다.

第 25 條 (議事錄) 理事會는 會議의 經過 및 結果를 記載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 및 出席理事가 記名捺印하여 保存하여야 한다.

第 4 章 研究諮問委員會

第 26 條 (研究諮問委員會) ① 研究院 院長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研究諮問委員會를 둔다.

② 前項의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別

途 規定으로 定한다.

第5章 姉妹研究機關

第27条(姉妹研究機關) 研究院은 第4条의 規定에 依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国内外의 大學 또는 研究機關을 姉妹研究機關으로 들 수 있으며 姉妹研究機關과의 業務協助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院長이 따로 定한다.

第6章 補 則

第28条(定款의 變更) 研究院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9条(規程의 制定) 이 定款에 規定이 없는 事項으로서 研究院 運營에 必要한 事項으로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別途規程으로 定한다.

第30条(解 産) ① 研究院이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研究院이 解散한 경우에는 그 残余財産은 特別히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國庫에 歸屬한다.

第31条(公 告)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할 事項은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인 "서울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定款은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研究院의 設立當時, 当然職 理事를 除外한 理事는 設立委員이 選出하고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 ③ (經過措置) 当然職理事가 아닌 設立當初의 理事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 ④ (經過措置) 本 研究院의 設立年度에 屬하는 事業計劃書 및 歲入歲出豫算書는 設立登記後 3月以內에 理事會에 提出하여 議決을 거친後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韓國保健開發研究院의 設立을 爲하여 下記名의 設立者는
現金 壹千壹百參拾四萬圓 整을 出捐하며 韓國保健開發研究院 設立
委員 全員은 韓國保健開發研究院法에 依하여 이 定款을 作成하
고 各各 西紀 1976年 4月 3日 아래에 記名 捺印함.

設立者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南 惠 祐

保健社會部長官

申 鉉 曠

定款 作成者

韓國保健開發研究院 設立委員

保健社會部次官 朴 承 威

經濟企劃院企劃次官補 徐 錫 俊

서울大學校保健大學院長 朴 亨 鍾

保健社會部醫政局長 張 慶 植

